

憲法修正案起草小委員會의
憲法修正案起草에 관한 報告

1987. 9. 17.

小委員長 玄 敬 大議員

憲法修正案起草小委員會委員長 玄敬大 議員입니다.

憲法修正案起草小委員會의 憲法修正案起草에 관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當起草小委員會는 1987年 8月 31日 第7次憲法改正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憲法修正案을 起草하라는 莫重한 任務를 띠고 本人을 包含한 民主正義黨의 許清一委員, 柳尙昊委員, 金鍾仁委員, 李致浩委員, 統一民主黨의 許京萬委員, 金奉鎬委員, 朴寬用委員, 新韓民主黨의 申敬說委員, 한국국민당의 申喆均委員 이상 10人으로 構成되어 9月 1日부터 17日 까지 여덟 차례의 會議를 가졌습니다.

當起草小委員會에서는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 提出된 各政黨의 憲法修正案試案과 그동안 與野 各 政黨間에 이루어진 合意改憲要綱을 基礎로 하여 前文과 本文 10章 130條 및 附則 6條로 된 憲法修正案을 起草하였습니다.

여러 委員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9 宣言이후 民主正義黨과 統一民主黨과는 8人政治會談^①, 民主正義黨과 新韓民主黨 및 한국국민당과는 4人政治會談이 각각 개최된 바 있습니다.

8人政治會談은 7月 31日부터 국회 524호실에서 民主正義黨에서는 權翊鉉議員, 尹吉重議員, 崔永喆議員, 李漢東議員이 代表로, 統一民主黨에서는 李重載議員, 李龍熙議員, 金東英

議員, 朴容萬議員이 代表로 兩政黨의 改憲案試案中 110 個의 爭點事項을 가지고 會談을 시작하여, ^{세 가지} 3 次에 걸친 合意 끝에 8 月 31 日 附則을 除外한 全項目에 걸쳐 완전 合意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民主正義黨과 新韓民主黨間的 4 人政治會談은 8 月 4 日부터 國會 523 號室에서 民主正義黨에서는 尹吉重議員, 崔永喆議員이 代表로, 新韓民主黨에서는 林鍾基議員과 金玉仙議員이 代表로 100 餘個項의 爭點事項을 가지고 協議를 시작하여 2 次에 걸친 合意 끝에 9 月 8 日 前文, 保安處分要件, 大統領任期問題, 國務委員 解任議決權問題의 ^{네 가지} 事項을 除外하고는 合意에 이르게 되었으며 ^{반대운동, 6.25 사변}

民主正義黨과 韓國국민당과의 4 人會談은 8 月 4 日 國會 第 522 號室에서 民主正義黨의 權翊鉉議員과 李漢東議員이 代表로, 韓國국민당에서는 金光洙議員과 金孝榮議員이 代表로, 約 90 個 項目에 관한 協議가 개시되어 2 次에 걸친 合意 끝에 ^{세 가지} 項目인 大統領任期, 選舉年齡, 地方自治 團體長의 直選問題에 關係 合意를 이룩하지 못했으나 9 月 4 日 兩黨의 總裁會談에서 3 個 未合意事項에 대한 原則的인 合意를 이루고 具體的인 審議에 대해서는 國會의 憲特에 委任한 바 있습니다.

또한 9 月 8 日부터 ^{까지} 16 日 ~~間에~~ 걸쳐 民主正義黨 ^과 統一民主黨 間에 8 人政治會談을 再開하여 이 憲法의 施行日과 國會議員

總選時期에 관한 附則條項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와같이 與野政黨代表間에 이루어진 合意事項을 中心으로 하여 當起草小委에서는 改憲案을 기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當起草小委員會에서는 改正案을 起草함에 있어서 지난 40餘年間的 우리 憲政史에서 여러차례나 改憲이 이루어졌으나 改憲後遺症으로 困難을 겪었던 點을 勘案하여 아무리 理想的인 憲法도 그것이 國民의 意思와 동떨어져 規範力을 發揮하지 못하면 無意味한 것이므로 國民의 意思가 充分히 反映되어 모든 國民이 憲法을 지키고 존중하는 強力한 「憲法에의 意志」를 가질 수 있는 憲法改正案을 起草하려고 努力하였으며,

또한 小委員들은 憲法의 한 條文, 한 條文이 죽어 있는 文字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歷史와 淵源을 갖고 있는 人類의 民權鬪爭史 내지는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發展史가 깃들여져 있는 歷史的 事實이라는 點을 認識하고 各 條文의 字句하나, 用語하나 하나에 한點의 소홀함이 없이 細密한 心血을 기울여 起草하였습니다.

그러면 當小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의 主要骨子を 分野別 및 條文順序別로 說明드리겠습니다.

첫째 前文 및 總綱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4.19 民主理念의 繼承을 明示하고, 國家의 在外國民 保護義務와

統一政策의 樹立·推進 努力, 그리고 軍의 政治的 中立性을 規定하였습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前文에서 民族自主精神과 民主主義理念의 結晶體이자 우리나라 近代的 政府建立의 精神的 礎石이라 할 수 있는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의 繼承을 明示함으로써 日帝支配로 인한 民族史의 斷切을 連結시켜 國家의 正統性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또한 民主憲政을 守護하기 위한 國民的 抵抗權問題에 관해서는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繼承토록 함으로써 그 精神을 反映하였으며, 다음 總綱에서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의 浮上과 함께 增加一路에 있는 海外僑民을 積極的으로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第2條 2項에 國家의 在外國民保護義務規定을 新設하였고, 分斷된 祖國의 現實을 勘案, 民族統一이 至上課題임을 認識하여 ^{대한민국} ~~國家는~~ 統一을 指向하^며 자유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推進하도록 第4條를 新設規定하였으며, 또한 文民政治의 實現과 軍의 政治介入 禁止問題에 관해서는 第5條 2項後段에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라고 規定, 그 趣旨를 反映하였고, 또한 政黨條項에 관해서는 政黨의 組織·活動과 함께 그 設立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뜻을 明示하였고, 한편

그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경우에는
그 解散을 憲法裁判所에 提訴하여 審判 받도록 改正案
第 8 條에 反映하였읍니다.

둘째로 國民의 權利意識이 고양되고 國民經濟生活이 크
게 向上된 現實에 맞추어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最大限
으로 伸張토록 國民의 基本權條項을 改正 起草하였읍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身體의 自由에 있어서는 國家權力의 濫用으로 因
한 基本權侵害를 防止하고 實質的인 基本權實現을 위하여
~~한~~ 第 12 條第 1 項에서 處罰과 保安處分 및 強制勞役의
要件으로 法律과 適法한 節次를 追加하였고, 同條第 2 項의 令
狀制度에 있어서도 適法한 節次에 따라 令狀이 發付되도
록 하였으며, 同條第 5 項에서는 刑事被疑者를 逮捕·拘束할
때에는 그 理由와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과 아울러, 逮捕·拘束된 者의 家族등에도 그 內容을 通
知하도록 規定하여 刑事被告人등이 有利한 證據提示 其他
防禦權을 適切히 行使할 수 있는 機會를 주도록 하였고,
同條第 6 項에서는 한사람의 國民이라도 억울하게 拘束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拘束適否審查請求權을 모든 拘
束者에 認定함으로써 對象犯罪에도 아무런 制限을 두지

대하여

아니하도록 憲法上 保障하였습니다.

다음 國民의 政治的 意思表示의 權利인 言論·出版 및 集會·結社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伸張하고 國家權力에 의 한 侵害事例가 없도록 이를 미연에 防止하기 위하여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을 案 第 21 條第 2 項에 明文化 하였으며, 다만 表現의 自由의 重要性和 通信·放送·新聞 등 言論媒體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施設基準을 정 하는 것은 不可避하다는 前提아래 通信·放送的 施設基準 과 新聞의 機能保障을 위해 必要한 事項은 法律으로써 정 할 수 있도록 同條第 3 項에 規定하였고,

다음 財産權의 保障에^{있어}서는 오늘날 大規模 公益事業등으 로 인하여 國民의 財産權侵害事例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 해, 現行 憲法에서는 公益을 強調함으로써 國民의 財産權 保障이 未洽한 點을 勘案하여 案 第 23 條에서 國民의 財産權의 收用·使用 및 制限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하도록 起草하였으며,

다음 國民의 選舉權問題에 있어서는 案 第 24 條에서 選舉年齡의 引下와 관련하여 與野가 合意한 精神을 반영 시킬 수 있도록 選舉年齡은 法律에 委任하였고,

다음 請求權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刑事被害者는 當該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는 權利를 案 第 27 條第 5 項에 新設하였으며, 刑事補償請求에 있어서는 無罪判決을 받은 때를 包含하여 無嫌疑不起訴處分등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때에도 補償請求가 可能하도록 案 第 28 條에, 包含하여 起草하였고, 他人의 犯罪로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者는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도록 案 第 30 條를 新設하였^{으며}하다.

다음 社會權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教育을 받을 權利의 내용으로서 案 第 31 條第 4 項에 大學의 自律性을 追加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經濟成長은 勤勞者의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勤勞者의 生存權과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勤勞福祉의 最大課題라 할 수 있는 最低賃金制의 實施를 案 第 32 條第 1 項에 歷代憲法上 처음으로 新設、明文化 하였으며, 특히 女性勤勞者가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않도록 第 4 項에 別도規定으로 新設하여 雇傭등의 分野에 있어서 實質的인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案 第 33 條第 1 項에서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에 대한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勤勞者의 勞動 3 權이 確實하

게 保障되도록 하였고 現行 憲法上 國家·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防衛產業體等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
치는 事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에
의하여 制限 또는 不認定되고 ^{있으나} ~~있는데~~, 勞動3權保障의 근
본취지라고 할수 있는 勤勞者의 團體交涉力向上에 있어
團體行動權의, 保障이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勘案하여 團
體行動權制限對象을 縮小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前提아래
案 第33條第3項에서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서~~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만을 制限할 수 있도록 起
草하였으며,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그
內容과 對象을 擴大하였는바, 女子와 老人·靑少年에 대한
國家의 福祉政策實施, 身體障礙者·生活無能力者에 대한 國
家の 保護規定을 案 第34條에 新設 내지 補完하고, 이
와 함께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
을 保護할 義務規定을 同條에 新設하였고, 環境權에 관한
案 第35條의 規定과 婚姻·家族·保健에 관한 權利規定
인 案 第36條를 補完하여 國家의 住宅開發努力義務와
母性保護規定을 새로히 追加하였습니다.

세째로, 國會의 機能活性化와 地位向上을 위하여 國會의
權限을 強化하였습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國會運營의 活性化와 少數派^護保障을 위해 案 第47條에서 國會臨時會 召集要求 定足數를 在籍議員 4分の1 이상으로 완화하고, 定期會에 있어서 豫算案·決算등 國政審議의 充實化를 기할 수 있도록 定期會의 會期를 現行 90日에서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趣旨에서 國會의 年間 開會日數를 現行 年150日로 制限하던 것을 削除하여 開會日數에 制限없이 國會가 開會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國會機能의 活性化를 期하고 行政府에 대한 보다 效率적인 감시·비판기능을 遂行토록 하기 위하여 國政監查權을 復活함과 同時에 現行的 國政調查權을 함께 規定함으로써 國政監查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國政調查는 特定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必要的한 경우 調查할 수 있도록 그 概念을 區分하여 案第61條에 規定하였고, 現행 憲法의 의원내각제적요소를 排除하고 行政府와의 權力均衡을 이루도록 現行的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議決權을 解任建議權으로 變更하여 案 第63條에 規定하였습니다.

네째로 行政府에 관한 事項으로서는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長期執權防止裝置를 마련하였으며,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調整하였습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政府形態는 大統領中心制의 現行制度를 유지하면서 大統領 直選의 國民的合意를 받아들여 案第 67 條에서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해 選出하도록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였고,

大統領被選舉權者의 要件에 5年이상 계속 國內居住要件을 削除^{각조}調整하였^고, 案第 68 條에서 大統領 任期滿了時 後任者 選舉는 任期滿了 70 日내지 40 日前에, 闕位된 때는 60 日 이내에 選舉를 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憲政史의 悲劇은 大統領의 長期執權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고 平和的 政府移讓을 保障함은 물론 인기영합적 政策을 豫防하고 소신있는 國政遂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의 任期를 5年 單任으로 案 第 70 條에 規定하였읍니다.

또한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하여 權威主義的 體制로의 變質을 豫防하는데 力點을 두었는 바, 現行憲法上 大統領에게 부여되어 있는 非常措置權은 發動要件을 아무리 엄격하게 制限하여도 政治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削除하고 그 대신에 案 第 76 條第 1 項에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緊急財政經濟處分과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

수를 發할 수 있도록 하고, 同條第 2 項에서 國家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
할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갖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는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制度와 緊急命令制度
를 新設 規定하였으며,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과 緊急命令
은 國會에 報告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命令은 ^{상실}~~無~~ 效力이 되도록 하였읍니다.
_{효력을}

또한 大統領의 權限縮少를 위해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改正案에서 削除하였으며,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는 國家元老諮問會議·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國
民經濟諮問會議를 案第 90 條 내지 92 條에서 그 名稱을
變更하거나 新設하였읍니다.

다섯째 司法權의 獨立을 保障하기 위하여 司法府에 관
한 規定을 補完하였읍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大法官任命節次를 改善하여
大法官의 任命에 民意를 反映함으로써 그 身分을 強化하
기 위하여 ^{大法院長의 提議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案
第 104 條第 2 項에 규정하였으며

司法府의 自律性 및 獨立성과 人事의 公正性을 기하기
위하여 案第 104 條第 3 項에서는 一般法官의 任命에 大法官

를 인의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會議의 同意要件을 規定하였고, 그밖에 大法院長의
任期는 現行 5年을 6年으로 연장하되 重任을 禁止하고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또한 裁判의 獨立성과 法官의 身分保障을 위하
여 案第 106條第 1項에서 法官은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해서만 罷免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軍事裁判을 管轄하는 特別法院으로서의 “軍法會議”
는 이를 “軍事法院”으로 그 名稱을 바꿈과 아울러 非
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는 人權尊重의 側面에서 死
刑을 宣告한 경우는 除外하도록 案第 110條에 規定하였읍
니다.

여섯째 憲法委員會를 廢止하고 案第 111條 내지 第 113
條에 憲法裁判所를 獨立機關으로 新設하여 憲法解釋의 一
貫성과 ^한~~繼~~_點續성을 유지하는 한편 司法府의 政治化를 豫
防토록 하였읍니다.

新設하려고 하는 憲法裁判所의 所管事項으로서는 法院의 提
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
國家機關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그리고 國家權力에

의하여 個人의 基本權이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任期 6 年の 裁判官은 法官의 資格을 가진者 중에서 9 人을 大統領이 任命하되 3 人은 國會에서 選出하고 3 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토록 하였고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그 審判要件을 엄격

히 하였음과 ~~함께~~ ^{한정하여} 憲法裁判所에 內部規則制定權을 부여하였
습니다.

일곱째 選舉管理에 있어서는 案第 114 條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의 任期를 現行 5 年에서 6 年으로 延長하였고, 委員의 罷免要件을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로 하여 그 身分을 保障하였으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制定權을 부여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여덟째 憲法上 經濟條項에 있어서는 自由市場經濟原理를 根幹으로 하면서 그동안 産業社會에서 야기되는 階層間·産業間·地域間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必要한 規制와 調整 그리고 國家의 努力을 強調하는 內容으로 補完 規定하였습니다.

먼저 經濟^{질서에} ~~의 社會化에~~ 관한 原則規定인 案第 119 條第 2 項에서는 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과 適正한 所

得分配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토록 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現行 規定을 補完하였고,

案第 121 條의 農地制度에 관하여는 耕者有田의 原則 達成과 小作制度의 禁止를 宣言하고 아울러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農地의 賃貸借나 委託經營의 認定 要件에 不可避한 事情을 追加 規定하였으며, 國土의 利用·開發을 위한 義務賦課規定인 案第 122 條에서는 國土가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本임을 明示하였고,

案第 123 條에서는 農漁業保護·育成을 위하여 國家는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計劃을 樹立·施行토록 하고, 地域間 均衡經濟의 達成과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해 需給均衡과 流通構造改善에 國家가 努力하도록 憲法에 明示하였으며,

案第 127 條에서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開發을 위한 國家的 努力을 明文化 하였습니다.

끝으로 改正憲法の 附則條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憲法の 施行日을 與野가 合意한 대로 現行憲法에 의
한 大統領의 任期가 終了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8年 2月
25日로 함과 아울러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
改正과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도록 案 附則 第1條에 規定하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開始하도록 案 附則 第2項^條에 規定하였으며,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
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總
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
하고, 이 憲法^{公布}施行^條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최초
의 集會日 前日에 終了하는 것으로 案 附則 第3條에 規
定하였고,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
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
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 政府

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 및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
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도록 함과 아울러 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
員이 최초로 選任된 때로부터 適用하도록 案 附則 第4條
에 規定하였으며,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된^한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여} 그 職務를 행하도록
案 附則 第5條 및 第6條에 規定하였습니다.

지금까지 現行憲法の 前文 및 本文중 起草된 重要 改正案의 要旨를 說明하였읍니다마는 本^의 說明에서 言及되지 아니한 現行憲法の 諸規定은 現行憲法內容대로 改正案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며 一部 경미한 部分의 改正 및 字句의 改正은 여러 委員님들께 配付해드린 憲法改正案對比表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添言하고 싶은 것은~~ 當 起草小委員會에서 合意成案된 草案에 대하여 學界의 金道昶教授와 朴鈞焄 法制處次長의 字句·體系에 관한 意見을 反映하여 當 小委員會案을 起草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관련하여} 請願審査에 대한 報告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沈完求 議員의 紹介로 제출된 憲法改正에 관한 請願, 任斗彬 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憲法改正에 관한 請願, 金在光 議員의 紹介로 제출된 憲法改正에 관한 請願 그리고 李龍澤 議員의 소개로 提出된 憲法前文改正에 관한 請願은 各各 大部分이 各政黨의 政黨改憲試案에 包含되어 있을뿐만아니라 主要爭點事項으로서 與野改憲案協商過程에 충분히 反映되었으므로 當起草小委員會에서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審査하였읍니다.

아무쪼록 當 起草小委員會에서 起草報告한 憲法改正案을 憲法改正特別委員會案으로 採擇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憲法修正案起草小委員會의 改憲案起草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